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임종득 · 이만희
주호영 · 박성훈 · 안철수
최형두 · 백종현 · 최은석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, 경로당 내에서 범죄·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·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,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·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.

이에 경로당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,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4 신설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4(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) ① 경로당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7조의4(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) ① 경로당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(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